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0년도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03. 31.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 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0년 12월 18일까지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제작 및 송출 지원 등 활발한 미디어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통하여 취약계층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 또는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원개요

- 지원분야 : 방송, 신문, 라디오, 잡지 등 상시 운영되는 미디어에 한하여 취약계층 카테고리를 별도 개설하거나 자체 제작 미디어의 50% 이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미디어 제작 및 송출
-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운영활동비, 교육훈련비, 공간 및 장비 대여비, 홍보비 등 사업운영비 일부 지원
 - ※ 지원금 교부 이전 집행 사업비는 보전 불가
 -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은 지원금으로 지출 불가
- 지원자격 :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하여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관련 신고(언론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 등)를 필한 단체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제작 및 송출이 가능한 단체
- 지원규모 : 총 38,500천원 (1~2개 단체 내외 선정예정)
 - ※ 예산범위 내 과제개수 조정이 가능하며, 과제별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음
 - ※ 적격과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지원조건

- 과제완료 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지원결정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
- 사업기간(2020년 12월 18일) 내 활동 결과물 제출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 홍보자료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로고 노출 및 지원 사실 표기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 참여제한

제외대상

1.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타부서 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중복지원 불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납중인 경우
 6.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20년 03월 31일(화) ~ 04월 17일(금)
- 접수기간 : 2020년 04월 14일(화) ~ 04월 17일(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평일 업무시간 내)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및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 참조
- A4출력물(제본금지)과 별도로 원본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별송
- ※ 이메일 접수인 경우 서명이 들어간 PDF 파일 제출必

- 접수 및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 취약계층 미디어 제작 및 송출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 Tel : 064-735-0623 / ✉ E-mail : flyjfly@ofjeju.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 1], [붙임 2]
 - 단체등록증 (법인(단체)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제작 및 송출 관련 신고증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3]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선정단체 및 사업참여자 실적, 참고자료 등)
 - 공인회계정산서 또는 거래내역사실확인서 1부 (※ 정산보고 시 제출)
-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는 작성서식(A4용지 종 방향) 작성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됨
-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비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불가
 -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

5.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20년 04~05월중 (※ 진흥원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필수서류 중 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2차 : 전문가 5인 이내 구성 면접심사 및 질의응답
-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 단체역량, 예산의 적절성, 운영의 적정성 등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각 10점)	배점
사업 타당성	• 본 사업의 이해도 및 계획과의 연계성	10점
	• 계획의 창의성 및 기타 사업과의 차별성	10점
	• 실현가능성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획의 적절성	10점
단체역량	• 운영인력 및 사업참여자 등의 전문성 보유 정도	10점
	• 취약계층 인식 및 관련 활동 경험 여부	10점
	• 취약계층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10점
예산의 적절성	•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10점
	• 집행계획의 현실성 및 투명성	10점
운영의 적정성	• 사업 운영인력의 역량(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10점
	•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성 여부	10점
총 점		100점

-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단체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한 제안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단체(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단체(자), 수행단체(자)의 책임으로 봄
-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단체(자) 부담
- 사업수행 착수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단체(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기한 내 사업수행을 중단·포기하거나 사업기간 내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포함 금액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